



Web Contents



2024년 05월 03일 18시 12분



출산·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

2024.02.14 조회수 335 등록자 선승미

○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36조의5(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) 개정과 관련한 지방세 감면 안내입니다.

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

☑ 감면대상 : 2024. 1. 1. ~ 2025. 12. 31. 자녀를 출산한 부모(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)

☑ 감면요건

- 감면대상 주택

-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한 주택
-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거주하는 주택

(단, 2024. 1. 1.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함)

-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

- 취득 당시 주택가액 12억원 이하

☑ 감면율 : 취득세 100% ※500만원 한도

✓감면신청시 유의사항

[감면 받은 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]

☑ 주택 취득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

☑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·중여하거나 다른 용도(임대 포함)로 사용하는 경우

(※상시거주 : 전입신고 기준으로 연속된 거주기간)

☑ 기타 문의 : 목포시청 세정과 ☎061)270-3498

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

○ 감면대상 : 2024. 1. 1. ~ 2025. 12. 31. 자녀를 출산한 부모

○ 감면요건

- 감면대상 주택

-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한 주택
-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거주하는 주택

(단, 2024. 1. 1.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함)

-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

- 취득 당시 주택가액 12억원 이하

○ 감면율 : 취득세 100% ※500만원 한도

✓감면신청시 유의사항

[감면 받은 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]

- 주택 취득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
-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·중여하거나 다른 용도(임대 포함)로 사용하는 경우 (※상시거주 : 전입신고 기준으로 연속된 거주기간)

○ 기타 문의 : 목포시청 세정과 ☎061)270-3498

목록

이전글

2024년 목포시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...

다음글

[AI 메타버스센터] 취업연계 무료교육 K-Digita...

MokPo - Si
Web Contents

